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724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구단7865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304,203,52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44,307,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redacted]시 B, 5층 C호" 부분을 "[redacted]시 B, 5층 C호(AL건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5행의 "사내이사를 "D"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다음에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D 이외에 다른 임원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갑 제1호증)]"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 부분을 "J 주식회사(등록번호 AM, 이하 'J'라고만 한다)[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주식회사 W(이하 'W'라고만 한다)" 부분을 "주식회

1) J는 당초 상호인 주식회사 W에서 주식회사 AN를 거쳐 상호가 순차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뒤에서 보는 현재의 주식회사 W(등록번호 AO)와는 별개의 회사이다(갑 제5, 7,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사 W(등록번호 AO, 이하 'W'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9~10행의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부분을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0~21행의 "원고는 2019. 10. 15. 위 사무실을 AH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면서 '무보증사용계약(전대)'을 체결하였는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9. 10. 15. AH 주식회사(AP센터)(등록번호 AQ,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2] 대표이사 AR, 이하 'AH'라고만 한다)로부터 AH 사무실 200평 중 약 2평을 전차하면서 '무보증사용계약(전대)'을 체결하였는데(AH는 2018. 4. 1. 위 사무실 200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S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6행의 "상가임대차계약서(갑 제13호증)은" 부분을 "상가임대차계약서(갑 제13호증)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2) 주식회사 AT(대표이사 AR,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는 AH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로 보이는바, 위 회사는 비상주 서비스로서 '사무공간대여가 아닌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 특성상 주소가 필요한 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다(을 제6, 13호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21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